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49호
2.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
3. 발의일자 : 2021. 2. 4.
4. 회부일자 : 2021. 2. 9.

II .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12.10.에 공포하여 2020.6.11.부터 시행하고 있어 「학교 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 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 보건교육의 정의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호).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성흠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49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보건교육 중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 마약류까지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약의 유해성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의 마약사범 수 증가율보다 높게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¹⁾

[표-1]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14년	5,699	75	841	1,544	1,883	840	446	70
'15년	7,302	94	969	1,793	2,272	1,230	853	91
'16년	8,853	81	1,327	2,196	2,631	1,433	1,080	105
'17년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년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19년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1) 출처 : 경찰청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표-2]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현황('20.11월 기준)

(단위 : 교, 시간)

급별	학교 수	실시 학교 수	미실시 학교 수	학급별 교육시간
초	602	598	4	2.7
중	386	379	7	1.9
고	320	307	13	1.8
특수	32	32	0	2.2
합계	1,340	1,316	24	2.2

- 특히 2019년 12월 10일 「학교보건법」 제9조(시행 2020. 6. 11.)가 “약물 오용·남용(濫用)의 예방”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으로 개정되었는바, 동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9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